

山林과 資源管理

金 演 表

山林廳 林業試驗場長

1. 序 言

우리나라는 지난 20餘年間 持續的인 經濟發展으로 급속한 工業化와 都市化가 進行되어 經濟的·社會的 與件이 向上되는 가운데 山林도 많은 發展을 하여왔다.

물론 지금까지의 山林發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지만 앞으로 豫想되는 社會經濟의 構造變化는 더욱 클 것이며, 이러한 社會的 變化는 山林資源管理에도 큰 影響을 줄 것이므로 尙後對策을 摸索해야 할 必要가 있다.

이러한 뜻에서 本稿에서는 山林資源現況을 檢討하고 問題點을 再認識하여 今後의 社會變化에 能動的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山林資源管理戰略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2. 山林資源의 特性

가. 資源利用의 一般特性

資源은 人間의 欲望과 社會의 目的을 同時에 充足시킬 수 있는 手段으로서 存在하기 때문에 效率性을 높이기 위한 資源利用方案은 그 時代의 社會·文化的인 要求에 따라 變換되며, 社會의 要求에 副應 못할 때는 資源으로서의 價値를 상실하는 것이 一般의이다.

나. 資源으로서의 山林

資源으로서의 山林도 一般資源利用과 같이 人間의 精神的·物質的 生活向上을 目的으로 使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같은 山林은 擴大한 空間을 占有하는 無機的土地資源(岩石, 흙

물, 空氣)과 自然生態系의 有機的生物資源(動, 植物)으로 構成되어 人間生活에 큰 影響을 미치고 있는 바, 一般的으로 木材生産을 山林의 經濟機能이라 하고, 水源涵養·土砂流出防止·公害防止 等の 用役生産을 山林의 公益機能이라고 한다.

廣大한 土地資源으로서의 山林資源은 人口가 增加하고 經濟發展과 人類文化가 向上됨에 따라 個人的·社會的 生活空間의 擴大 再編成의 必要性和 함께 均衡있는 開發이 要求되고 있다.

또한 經濟資源으로서 林木資源은 更新可能資源(Renewable Resources)이라는 점에서 鑛物資源等の 埋藏資源(Stock Resources)과 區別되며, 木材生産과 公益生産의 基礎가 된다. 社會가 林木資源을 적절히 利用·管理한다면 山林資源의 多角的 潛在的 生産能力을 고도로 發揮하게 할 수 있겠으나 이를 잘못 다루면 그로 인한 經濟的 損失과 社會·公益的 被害가 클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이 極히 어렵다.

3. 우리나라의 山林現況

가. 山林資源

우리나라의 山林土地資源은 約 660萬ha로서 國土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國民1人當 山林所有面積은 0.17ha, 單位面積當 年間生長量은 約 0.6m³/ha로 表1과 같이 國際的으로 比較하면 世界平均에 미달하고 있다.

그리고 表1에서와 같이 總林木蓄積資源은 約 1億5千萬m³이며 이중 幼齡林이 約1億m³, 伐採利用possible 成熟林이 約30%인 5千萬m³으로 成熟林中 經濟的으로 利用possible 蓄積은 지금

〈表 1〉 世界の山林資源

國家	資源 區分 (100萬ha)	山林 面積 (%)	山林 蓄積 (100萬m ³)	年間總 生長量 (100萬m ³)	1人當 山林面 積(ha)	1人當 山林蓄 積(m ³)	ha當 蓄積 (m ³ /ha)	年間 生長量 (m ³ /ha)
韓國	6.7	66	152	4.1	0.17	3.8	23	0.6
日本	25	67	2,025	76.5	0.25	17.5	82	3.1
北美 카나다	735	38	36,086	951.0	15.5	817.0	99	1.3
美國		34	18,261	647.1	1.5	87.5	88	
유럽	141	28.6	11,900	336.0				2.4
英國		7	157	7.0	0.03	2.1	79	
西獨		29	1,022	37.7	0.1	16.6	149	
핀란드		32	1,490	55.3	4.0	313.3		
蘇聯	910	40.6	73,250	844.0	3.3	296.0		0.9
아프리카	605	20	3,800	-	-			
世界	3,991	29.8	306,000	3,200	1.0	76.5	76.7	0.8

까지 調査된 바 없으나 매우 制限된 숫자일 것으로 推定된다. 우리에게 重要한 蓄積資源은 우리가 推定못하는 經濟的 利用可能蓄積이라 할 수 있으며 經濟的 利用可能性이 없으면 物理的 存在만으로 經濟資源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山林 所有構造

우리나라는 全體山林面積의 73%가 私有林

으로서 國有林이 相對的으로 적으며 山主는 約 176萬名으로서 山主平均所有規模는 2.7ha이다.

또한 私有林 所有者中 約 16%가 不在山主로서 이들 大部分은 山林經營보다는 墳墓地 確保目的으로 山林을 保有하고 있는 實情이며 不在山主는 매년 增加趨勢에 있는 것으로 推측된다. 그리고 5ha미만의 山主가 全體의 約 88%인 150萬名으로 이들 역시 山林을 合理的으로 經營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表 2 參照)

〈表 2〉 私有林 所有規模別 山主比率(1972年 現在)

所有規模	所在 山主		不在 山主		全體 山主數	全體 面積	備 考
	山主數	面積	山主數	面積			
5ha未滿	74.8	32.1	13.5	6.5	88.3	38.5	農用的林業
5~30ha	9.0	31.8	1.9	7.5	10.9	39.4	副業的林業
30~100ha	0.5	9.3	0.2	3.2	0.7	12.6	兼業的林業
100ha以上	0.1	6.2	+	3.4	0.1	10.5	主業的林業
總 計	84.4	79.4	15.6	20.6	100.0	100.0	

다라서 副業的 林業, 兼業的 林業이 私有林 經營의 重要部分으로 私有林面積의 50%以上을 占有하고 있으나 이들은 農業을 經營하며 여유가 있을 경우에 限하여 山林에 投資를 하는 傾向이므로 經營意欲·資金·技術 等이 不足한 實情이다.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山林所有規模가 零細하며 特히 都市 周邊의 山地는 財産의 備蓄 對象으로서 分割化가 進行되고 있어 林業經營을 위한 山林所有構造는 極히 不安定한 狀態이

다.

다. 木材의 需給現況

우리나라의 木材 需給은 表 3,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總木材供給量의 約 85%를 外材에 依存하고 있으며, 80年 現在 世界各國의 總木材輸入量의 5%를 우리나라에서 차지하여 世界에서 木材輸入國의 4위를 記錄하고 있다. 이와 같은 現象은 앞으로 계속될 展望으로서 莫大한 量의 外貨가 所要될 것이다.

〈表 3〉 國內 木材需給實積

年 度	計	需 要			供 給			
		內需用	輸出用	1人當 內 需	國內材 (A)	外 國 物量(B)	價 格	材 B/A + B(%)
	(千 m ³)	(千 m ³)	(千 m ³)	(m ³ /人)	(千 m ³)	(千 m ³)	(千 \$)	
1965	1,259	748	511	0.03	503	756	26,157	60
1970	4,000	1,713	2,287	0.05	845	3,155	126,725	79
1975	6,465	2,889	3,576	0.08	896	5,119	271,253	85
1976	7,825	2,700	5,125	0.08	943	6,323	417,997	87
1977	9,817	4,406	5,411	0.12	1,027	7,807	530,094	88
1978	11,611	6,346	5,265	0.17	996	9,427	650,789	90
1979	10,940	6,616	4,324	0.18	952	9,086	1,017,044	91
1980	7,750	5,785	1,965	0.15	1,008	6,141	865,950	86
1981	7,265	4,585	2,680	0.12	1,130	5,558	645,304	83
1982	7,417	5,661	1,756	0.14	1,157	5,615	607,687	83

〈表 4〉 世界原木輸入 上位 10 個國 趨勢 單位: 千 m³

順位	國 家	1977	%	1979	%	1980	%
1	Japan	56,904	47.8	57,739	46.7	50,726	43.5
2	China	6,393	5.4	7,589	6.1	7,589	6.5
3	Italy	6,045	5.1	6,093	4.9	6,525	5.6
4	Korea	7,807	6.6	9,086	7.4	6,141	5.3
5	Sweden	4,033	3.4	3,377	2.7	4,442	3.8
6	Finland	4,488	3.8	3,744	3.0	4,098	3.5
7	Austria	2,697	2.3	3,480	2.8	4,031	3.5
8	West Germany	3,510	2.9	3,795	3.1	3,896	3.3
9	U·S·A	3,195	2.7	3,597	2.9	3,683	3.2
10	France	2,885	2.4	2,933	2.4	3,228	2.8
	其 他	21,106	17.7	22,037	17.8	22,260	19.1
	計	119,063	100	123,530	100	116,619	100

4. 우리나라 山林資源의 바람직한 모습

우리나라의 山林資源은 所有構造가 零細하고 山林蓄積이 빈약하여 土地·資本 生産性이 낮으며 多量의 外材導入으로 經濟的 劣勢에 놓여 있으나, 效率的인 山林資源管理下에서 經濟目的에 主로 使用하는 林地의 ha當 蓄積을 100m³로 增加시키며 年間生長量을 3m³/ha로 가정하고 經濟林을 4,000千ha로 維持 管理하면 年間 1,200萬m³의 木材生産이 可能하나 이는 2000年代의 木材需要量 2,500萬m³의 50%에 불과하므로 木材의 高度利用研究·代用木材開發 등으로 木材 需要量을 줄여서 外材依存度를 最少限으로 減縮시킬 必要가 있으며, 其他 山地도 水資源 涵養·國土保全·休養地·野生動物 保護等에 使用하는 한편 木材生産에도 積極 活用하여야 山林의 바람직한 모습이 實現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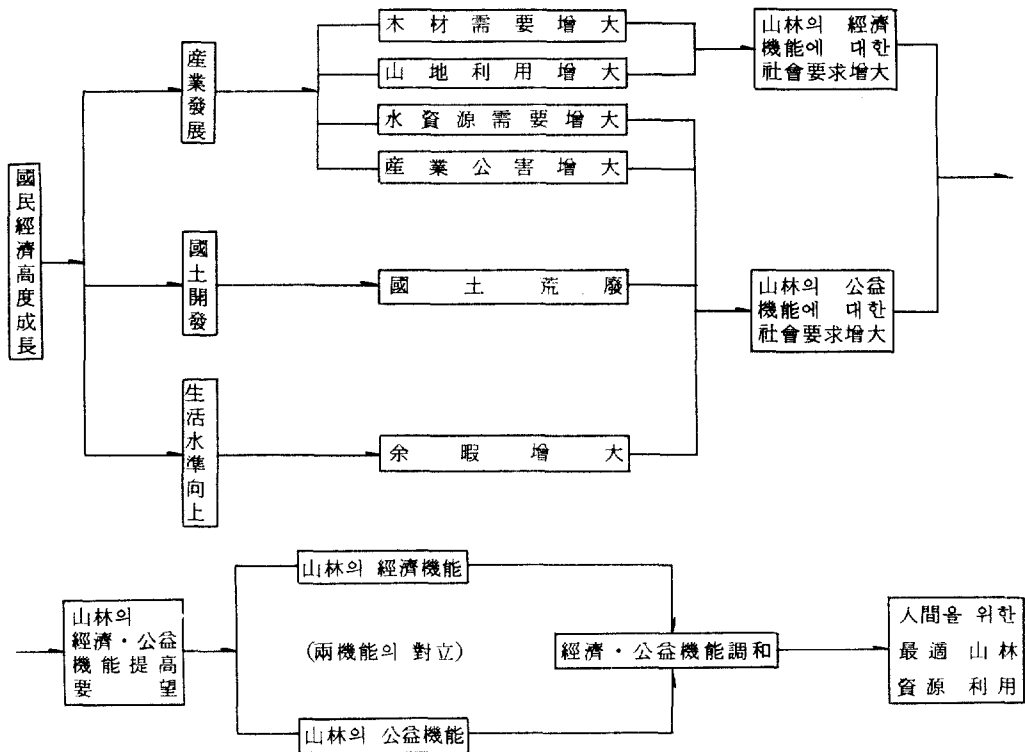
이와 같은 潜在的 生産可能性을 갖고 있는 山林을 급속히 變化하는 社會에서 效果的으로 變換시켜 今後的 國民生活를 向上시키는 데 使用하기 위한 山林資源의 바람직한 利用은 그림 1과 같이 山林의 經濟機能과 公益機能을 同時에 最高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社會의 山林便益에 대한 要求增大에 對한 副應과 山林의 經濟·公益 兩機能의 調和는 現在와 같이 生産性이 낮은 山林으로는 不可能하므로 量的인 側面에서 山林生産力을 現在の 水準보다 增加시킬 수 있도록 하며, 質的인 側面에서는 國民生活水準向上에 따른 山林의 均衡있는 配分이 이루어지도록 山林資源의 最適利用度를 높일 수 있는 山林施業이 同時에 이루어져야 하며 山林의 最適利用을 위한 各機能間的 調和는 表 5와 같은 關係에 있으므로

〈表 5〉 山林의 利用目的과 併存可能性

山林 利用의 主目的	山林利用의 副目的	魅力的인 環境	레 크 레이션 機會	徹底的 自然 保護	野 生 動物 保護	自 然 水源 保全	國 土 保 存	木 材 生産斗 收 穫
魅力的인 環境維持			○	+	○	●	●	△
레크레이션 機會提供		○		×	△	○	○	△
徹底的 自然保護		●	×		●	●	●	×
野生動物保護		○	△	○		●	●	△
自然水源 保全		●	○	+	○		●	○
國 土 保 全		●	○	+	○	●		△
木材生産 및 收穫		△	○	×	△	△	△	

- 併存可能
- 主로 併存하나 例外的으로 併存않는 것도 있다
- + 반드시 併存한다고 確言할 수 없다(中立의이다)
- △ 部分的으로 併存한다
- × 併存 困難·不能



〔 그림 1 〕 山林資源의 바람직한 利用

山林利用計劃에 있어서 判斷의 基準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5. 앞으로의 우리나라 山林資源 管理 戰略

우리나라 山林의 바람직한 모습은 人間生活

을 充分히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는 山林資源의 經濟·公益 兩機能의 最適利用調和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山林의 生産力增大를 必要로 한다.

그러나 經濟·公益 兩機能의 調和와 生産力の 增大가 自動的으로 달성되지는 않으므로 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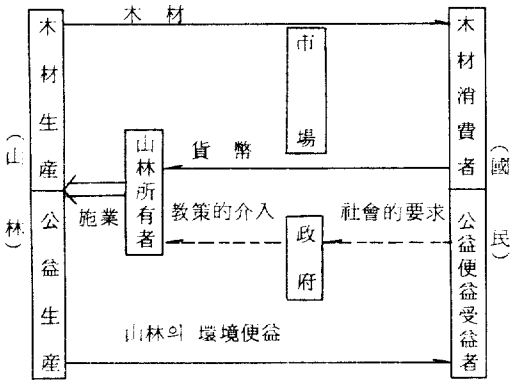
會發展에 따라 이들 目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山林資源管理戰略이 必要하게 된다.

가. 山主機能의 強化

우리나라는 山林面積의 約 72%를 個人山主가 所有하고 있으므로 山主의 意思에 따라 山林資源管理方向이 크게 變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國家가 많은 干여를 하여 왔으나 民主的으로 보다 效率的인 資源管理를 위하여는 山主가 自發的으로 參與할 수 있는 여건을 造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支援者로서의 政府 調整機能 強化

山主가 所有林木을 伐採할 경우는 市場을 通하여 화폐수입을 얻을 수 있으나 水資源·土砂流出防止 等の 公益便益을 위주로 混淆林을 造成하여 山林伐採를 抑制할 경우 山主는 反對給付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그림 2와 같이 政府가 山主와 山林의 公益便益 受益者間에 調整者로서 積極 參與하여 이들의 利益을 調整하는 “支援者”의 역할을 強化할 必要가 있다.



(그림 2) 山林生産과 交換

다. 山林에 對한 公的規制와 補助強化

今後 山林의 最適利用을 위해서는 山林에 對

하여 政府의 規制와 調整이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國有林의 比率이 낮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社會要求에 의하여 私有林도 土地의 公概念下에서 公益을 위하여 使用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一般的으로 公的規制가 없을 경우 山主는 적은 비용으로 造林·大面積皆伐 등에 의한 單純한 經濟指向林을 造成管理함으로써 木材收入은 最高로 얻을 수 있겠으나 國民의 公益便益量은 적게 된다. 反面 公益的 規制가 강할 경우 山主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復層林을 構成하여 公益指向林을 유지함으로써 山主의 木材收入은 적어지고 國民의 公益便益은 증가될 수 있다. 따라서 國家입장에서는 經濟·公益의 純便益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山林을 規制할 必要가 있으나 山主의 經濟的 손실과 公益的 기여도에 對하여는 적절한 課稅·補助政策에 의하여 보상해줄 必要와 責任이 있다.

<表 6> 主要國의 山林面積率 및

國家 및 地域	國·私有林構成比		單位: %
	山林面積率	國公有林構成比	
韓 國	66	28	72
美 國	33	27	73
日 本	67	32	68
유 럽	32	53	47
카 나 다	44	92	8
世界平均	29	75	25

현재 우리나라의 山林補助는 山林造成事業에 重點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公益便益에 對한 것보다는 낮은 木材收益에 對한 補助性格이 크므로 앞으로는 國民厚生과 國土保存을 위해 公的 規制를 강하게 받는 山林과 公益性格이 큰 復層林·小面積擇伐 等の 山林施業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책이 강구될 必要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公的規制와 補助의 基本概念下에서 外國의 경우와 같이 社會發展에 따라 國民厚生을 위한 保安林(公益林)의 比率을 점

<表 7>

保安林面積變化

單位: %

國家	年度	46	53	63	73	79	83	備 考
日 本		8(4)	10(3)	16(7)	28(14)	29(14)	33(16)	()는 國有林 比率
韓 國				15.6	11.3	9.5	6.2	

진적으로 擴充시켜 나가야 하며, 保安林의 公益林으로의 性格과 役割을 인식시켜 나가야만 한다.(表 7 參照)

그리고 現在 保安林 指定對象에서 제외되어 있는 國有林이 木材生産에 主目的을 두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水源涵養・國土保全 等の 公益機能을 많이 가지고 있는 國有林은 保安林에 制度的으로 포함시켜 公益便益創出에 政府가 能動的으로 참여하는 方案의 검토도 바람직 할 것이다.

라. 山林經營構造改善

우리나라는 山林所有構造가 零細하고 山林資源이 빈약하므로 山林을 일정규모로 統合 協業經營化하여 規模의 영세・林木資本의 빈약 등의 構造問題와 山主의 經營意慾缺如, 個人的인 경험부족 等の 人的・技術問題를 해결하도록 하고 山主協業體에 對한 指導를 強化하여 山林의 最適利用을 보다 쉽게 추진하도록 할 必要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私有林에 많은 投資를 하였으나 事業을 지나치게 分散하여 기대만큼의 效果를 거두지 못하였다. 앞으로 私有林經營의 合理化를 도모하기 위한 協業經營을 全國에 擴散시키기 위해서는 韓獨山林事業機構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시범협동조합(Pilot Cooperation)의 경영모델을 각 지역별로 시범적으로 實施하여 그 事業의 效果가 全山地에 상호연쇄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據點開發을 적극 推進해나갈 必要가 있다.

또한 山林資源管理의 沮害因子인 都市周邊의 零細한 不在山主의 增加에 대하여는 山地所有目的에 따라 적절한 補助 또는 課稅政策을 實施하여 都市周邊 林野의 分割・零細・投機를 效果의으로 防止할 對策樹立이 바람직 하다.

마. 山林勞動의 生産性 向上

현재 우리나라의 山林事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年間 約 1,800萬名의 山林勞動이 所要되는 것으로 推定된다(表 8 參照)

이와 같은 所要勞動의 約 90%정도를 農

〈表 8〉 山林事業 所要勞動力 推計

細部事業別	事業量 (’81~’83平均)	所要勞動力 (人/日)	備考
總計		17,792,000	
○養 苗		2,152,000	
・幼 苗	333,918 千本		
・成 苗	230,353 "		
○造 林	123,056 ha (321,176 千本)	2,537,000	
・地拵作業		750,000	
・植 栽		1,787,000	
○天然林保育	14,052 ha	295,000	
○事後管理		10,926,000	
・下 刈	359,597 ha	2,158,000	
・追 肥	229,909 ha	1,380,000	
・撫 育	369,403 ha	7,388,000	
○林木伐採		1,882,000	
・間 伐	139,417 m ²	260,000	
・一般伐採	1,232,645 m ²	1,622,000	

林兼業勞動力이라 가정할 때 山林作業全業勞動者는 約 2,500名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專門化된 山林勞動力이 양성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山林勞動이 不安定한 狀態로서 生産性이 낮은 실정이다.

一般的으로 1次産業의 生産은 土地・勞動・資本・技術進歩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산촌노동력의 감소가 뚜렷하므로 이들의 勞動生産性을 높일 必要가 있다. 단기기간내에 生産性의 向上이 가능한 山林勞動을 전문화시켜 勞動生産性을 높이는 것이 山林生産力 向上의 한 방편이며 이를 위해서는 體系的이고 전문화된 산림노동훈련기관의 체계적인 운영이 必要하다.

바. 外材의 效果的 管理

國內産業發展을 위하여 그동안 全體原木使用量의 約 85%를 外材에 依存해온 우리는 앞으로 계속 外材를 안정적으로 供給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매일 平均的으로 1만8천 m²의 外材를 導入한 結果 國內林木生産(造林)活動에 負的인 영향을 가져왔다. 國內 木材生産의 原料供給測面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林木生産이라는 1次産業으로서의 林業生産活動은 위축되어 왔다. 이는 國內山主의 낮은 林木

價受取率에서도 알 수 있다.(表 9 參照)

이와 같은 낮은 收益性은 山主의 山林에 對한 再投資意慾을 감퇴시키고 있으므로 外材의 效率의 管理는 2次産業인 木材産業과 1次産業으로서의 林木生産活動 그리고 3次産業性格의 公益生産을 調和있게 發展시키도록 하는 重要한 前提條件이므로 山主・企業・政府 間에 충분한 檢討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表 9〉 國家別 山主의 林木價受取率

國 家	韓 國	日 本	美 國	備 考
受取率(%)	20	53	40	製材木 販賣價基準

사. 生産要素의 最適配分 摸索

지금까지의 山林資源管理는 社會要求에 따라 表 10 과 같이 山地綠化에 집중되어 왔으며 山林의 施業技術・研究・人力・組織・資金 等도 特定分野에 편중되어서 山林의 均衡發展에 장애요인으로 作用하고 있음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山林의 經濟・公益 兩機能의 調和와 山林生産力增大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機構의 再整備과 人力・資金・關心度의 均衡있는 分

〈表 10〉 山林의 資金配分

區分	年度	1970	1975	1977	1979	1980
總 額	百萬元 3,853	10,192	19,509	28,014	36,586	
總 計	100%	100	100	100	100	100
造 林	63.5	33.5	55.8	43.6	44.6	
砂 防	20.0	29.0	28.4	40.8	39.3	
山林保護	7.4	26.8	10.7	8.5	5.6	
試驗研究	9.2	10.7	5.1	7.1	10.6	

散配置가 이루어져야할 必要가 있다.

아. 山林投資擴大

이상에서 살펴본 山林資源管理를 보다 效率의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資金의 충분한 支援이 뒷받침되어야만 可能한 것이다.

그러나 表 11 과 같은 縮小傾向의 山林開發豫算으로는 所期의 成果를 얻기가 매우 힘든 形편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山地綠化 爲主의 山林開發 資金支援은 今後 山林의 木材生産의 經濟便益과 水資源・土砂流出防止 等の 公益便益을 함께 최대로 얻을 수 있도록 社會的 次元에서 決定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表 11〉 山林開發의 豫算比較

國 別	區 分	年 度	1972	1974	1978	1980
	山林豫算 總豫算	(%)	0.8	0.7	0.6	0.5
	ha 당豫算	(A) (원)	970	1,424	4,136	5,631
	豫算增加率	(%)	100	147	426	580
	林業生産/國民總生産	(%)	1.9	1.6	1.0	1.0
	山林豫算 總豫算	(%)	0.8	0.8	0.8	0.8
	ha 당豫算	(B) (원)	3,958	7,610	26,583	37,882
	豫算增加率	(%)	100	192	672	955
	B/A		4.0	5.3	6.4	6.7

6. 結 言

우리나라 山林은 70年代 初般以後부터 社會의 배려와 관심 속에서 많은 發展을 하여 왔으나 山林資源基盤造成的 未洽과 不利한 社會・

經濟的 條件下에서 한쪽에 편중된 發展過程을 겪어 왔다.

이러한 時點에서 急變하는 未來의 社會變化에 能動的으로 對處해나갈 수 있는 山林資源管理를 目標로 하였을 때의 現實 問題와 向後對

策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山林資源 특히 經濟的 利用可能資源이 빈약하다.

둘째, 山林所有構造가 영세하며 效果的인 山林經營基盤이 造成되어 있지 않다.

셋째, 外材에 對한 의존도가 높고 國內山林資源에 대한 인식도가 낮다.

이와 같은 構造的인 問題를 점진적으로 改善하면서 今後 보다는 山林資源管理를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對策樹立이 바람직하다.

① 새로운 山林資源管理가 今後 人間生活를 最大限으로 向上시킬 수 있도록 計劃되기 위해서는 山林의 經濟·公益 兩機能의 最適調和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데 兩機能의 最適調和를 위해서는 우선 山林生産力을 增大시켜야 한다.

② 山主가 能動的으로 參與하여 山林資源管理에 對한 意思決定을 할 수 있는 環境造成과 山主의 機能強化가 必要하다.

③ 또한 山林의 公益機能增大를 위하여 정부가 支援者로서 能動的으로 參與할 必要性이 있다.

④ 山林의 最適利用을 目的으로한 私有林의 公的規制에 대하여는 충분한 補助金을 지불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國有林도 保安林에 包含시켜 地域公益增大를 위하여 保安林을 擴大 再調整할 必要가 있다.

⑤ 私有林을 協業經營化하므로써 零細한 山林所有構造를 改善할 必要가 있으며, 都市周邊 山地의 零細化·不動産投機化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조정책과 과세정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⑥ 山林勞動生産性을 向上시켜 經濟·公益 兩機能의 調和있는 山林資源管理를 수행할 수 있도록 專門林業勞動者를 養成시키도록 한다.

⑦ 外材導入은 2次産業인 國內木材産業뿐 아니라 1次産業인 林木生産活動과 3次産業의인 公益生産에도 미치는 影響이 크므로 山主·企業·政府가 充分한 檢討를 할 必要가 있다.

⑧ 山林資源의 最適利用은 生産要素配分에 큰 影響을 받으므로 生産要素의 最適配分이 全分野에 걸쳐 檢討되어야만 할 것이다.

⑨ 山林資源管理를 보다 效率的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山林의 經濟性 및 公益性을 勘案하여 社會的인 次元에서 山林開發資金이 決定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우리는 山林과 資源管理라는 側面에서 山林 問題와 今後 發展方向 및 改善策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改善策이 이루어지지 않는 限 今後의 不確實性 社會에서 山林의 發展은 더욱 不確實해 질 것이고 後孫에 남겨져 林木資源·水資源·環境資源 等の 增産維持에 큰 차질을 가져올 것이 豫想된다.

山林과 資源管理에 對한 意見

李 萬 雨 教授(忠北大)

① 多目的 利用에 위한 森林資源의 造成은 高度의 林學知識과 技術을 基盤으로 한 山主의 自發的인 成就意慾없이 從前과 같은 政府의 規制偏重的인 手段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룩할 수가 없다.

現在 實行되고 있는 第2次 治山綠化 10 個年計劃에서 山地資源化, 經濟林造成 등을 부르짖고 있으면서도 技術行政的 體制를 갖추어 山主가 스스로의 經營意慾을 助長行政的 林政을 펴지 못하고 오히려 過去보다 地方山林行政機構가 縮小되어 있고, 行政規制의 性格을 띤 部署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어 그 目標達成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山林資源의 多目的 經營을 위해서는 技術行政이 이루어 질 수 있는 産業部署로 옮기거나 獨立된 部署를 設置하여 森林이 가지고 있는 複合的인 機能을 綜合的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地方山林關係公務員의 絶對的 不足과 質的 水準이 낮은 관계로 因해 技術行政을 展開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高度의 林業技術을 바탕으로한 助長行政遂行에 있어서 이는 대단히 큰 問題이다.

따라서 林業技術公務員의 專問要員化와 擴充으로 地域實情에 맞는 上向的 山林行政을 펴나가야 한다.

③ 山林組合이 林業技術指導 및 教育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組合指導員의 確保, 指導員에 對한 教育의 強化가 必要하며 이들에 對한 報酬의 現實化가 要求된다.

④ 우리나라 國有林은 國有林特別會計에 屬해서 過伐되고 있다. 이를 防止하고 國有林에 과감히 投資하여 國有林經營을 合理化시켜 私有林經營者에게 모범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國有林特別會計를 一般會計에 偏入시켜야 한다.

李 在 石 專務(韓國養苗協會)

① 山林開發을 위한 基金이 不足하므로 輸入原木에 賦課金を 課하거나 山林用役을 利用하는 收益者負擔金(골프場 및 수렵장 入場料 賦課金)으로 山林振興基金을 造成하여 山林資源을 造成, 活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山林을 10年以上 所有하여 山林經營을 한 所有主가 山林을 賣却할 때에는 讓渡所得稅는 免稅하여야 하며 大規模의 山林經營을 誘導하기 위하여 20ha이상의 山林을 經營할 때에는 山林에 대한 相續稅는 免除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營林計劃이 作成되어 있을 때에는 伐採 申告制는 廢止되어야 한다.

④ 林業勞動力의 원활한 供給을 爲하기 위해 山林中央部署에 林業勞動業務를 담당할 局 또는 課가 設置되어야 한다.